

난

*포스터 부착 전
해당 부분을
점선에 따라
오려내세요

관찰자



노인학대의 약 80%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.
하지만, 학대 당하는 노인들은 자책감과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
학대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.

24시간 노인학대 신고·상담 1577-1389 또는 110

당신의 신고로 어르신께 미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.



- ▶ **노인학대란?**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 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항)
- ▶ **노인학대 신고의무**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)
- ▶ **신고자의 비밀보장**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


충청북도지정

일시보호침터

행복이 시작되는 작은 침터



(재)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
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
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